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정 1989. 6. 1.(규칙 제 81호)

5차 변경 2010.12.21.(규칙 제541호)

개정 2016. 3.23.(규칙 제701호)

개정 2020.11. 5.

제1조(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2조(피선거권 자격기준) 정·부회장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에 1년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단, 대의원은 B학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 C학점 이상인 자)
4. 체육학과는 경기실적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단, 경기입상실적 중 개인전과 단체전이 모두 있는 종목의 단체전 성적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인정된 세부종목에 한한다.
5. 학칙에 의거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선거방법) ① 학생회 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체육학과는 부별 주장을 대의원으로 하되, 남·여 등 팀이 달리 운영되는 경우는 따로 구성하며, 그 외의 학부(과)는 학부(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 ③ 학생회 회장 입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학생회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 3. 23.>
- ④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사태 등 비상 시 온라인투표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정·부회장 및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매 년도 1년으로 하되, 재임중 근신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출시기) 정·부회장 및 각종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전에 선출하고 대의원 및 대의원회의 정·부회장은 전임 학생회장의 임기만료 15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에서 부담한다.
- ③ 위원회는 훈련학생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학생지도위원,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훈련학생처장이 된다.
- ④ 기능
 1.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벽보 및 선전문에 관한 사무
 4. 투·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

⑤ 권한

1. 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선거 절차상의 행위는 개회, 성원, 공포 등 합법적인 권한으로 인정한다.
2. 선거 절차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진행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제7조(입후보등록) 학생회 회장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소속부(과) 지도교수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해당학기 이전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사진 2매
4.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학생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개정 2016. 3. 23.>

단, 천재지변, 감염병 사태 등 비상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거운동) 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후 입후보자의 합동의견 발표회를 갖게 한다.

②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0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투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③ 투표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개표) 개표는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1조의1(무효표) 다음의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어느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둘 이상의란에 기표를 한 것
5. 어느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기표 이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 것

제12조(당선인)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벌칙) 위원회는 선거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부 칙(1989. 6. 1.제 81호)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9학년도 최초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일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1992. 6.27. 제115호)

본 시행세칙은 199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30. 제279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26. 제399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4. 제501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1. 제541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3. 제701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5.)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